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성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86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24.

발 의 자:신성범·김석기·김승수

김용태 • 박대출 • 박덕흠

박정하・박정훈・박충권

이성권 • 정희용 • 조은희

최수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직접지불금(이하 "기본직불금"이라 함)을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. 이러한 지급요건 중 하나로,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(이하 "농외소득"이라 함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(현행 3,700만원)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.

그런데 해당 기준은 그간 소득 증가 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도입된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농외소득 금액의 기준을 소득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되, 사업 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9조제3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을 "통계법에 따른 지정 통계 중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 년마다 고시하는 금액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직접지불금을 등록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	제9조(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
자) ①・② (생 략)	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③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	
상자가 될 수 없다. 다만, 제4	
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	
당하는 토지분에 한하여 지급	
대상자가 될 수 없다.	
1.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	1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	「통계법」에 따른 지정통계
상인 자	중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
	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
	이 5년마다 고시하는 금액 -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